

수원지방법원 2017. 8. 10 선고 2016가단3161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7. 7. 6

판 결 선고 2017. 8. 10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용인시 처인구 C 대 423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2, 23, 30, 29, 26, 27, 28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趙부분 시멘블록조 함석지붕 평가건 43.3㎡ 와같은 도면 표시 19, 7, 8, 9, 10, 11, 21, 20, 16, 17, 18,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◎부분 연와조 및 시멘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및 함석지붕 평가건 건물 19.8㎡를 각 철거하고,

나. 위 數부분 대지 43.3㎡, 邸부분 대지 19.8㎡와 별지 도면 표시 31, 32, 23, 22, 28, 27, 26, 29, 4, 21, 11, 10, 9, 8,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◎부분마당 33.8㎡, 같은 도면 표시 18, 17, 16, 20, 5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◎부분 추녀밑 공지 4.1㎡를 각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,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내지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용인시 처인구 C 대 423㎡(이하 '이 사건 대지'라 한다)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하여 있는 위 D 대 241㎡를 소유하고 있는데, 그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가 이 사건 대지와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22, 23, 30, 29, 26, 27, 28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邸부분 시멘블록조 함석지붕 평가건 43.3㎡와 같은 도면 표시 19, 7, 8, 9, 10, 11, 21, 20, 16, 17, 18,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 연와조 및 시멘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및 함석지붕 평가건 건물 19.8㎡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,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, 32, 23, 22, 28, 27, 26, 29, 4, 21, 11, 10, 9, 8,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趙부분 마당 33.8㎡, 같은 도면 표시 18, 17, 16, 20, 5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敏부분 추녀밑 공지 4.1㎡를 점유,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달리 이 사건 대지 중 위와 같이 점유,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그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,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㉓, ㉔부분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㉕부분 각 대지(건물의 부지, 마당, 공지)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 소유의 주택은 피고의 모 E이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97.3. 27.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, 이미 오래 전부터 하등의 문제 없이 이를 소유하여 왔는바, 이제 와서 원고가 경계침범을 이유로 철거 및 인도를 구함은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해 온 피고의 원시취득을 부정하는 결과이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.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대지 중 위 數, , ㉔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,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위 激, 趙, ㉔부분을 시효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

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권덕진

별지